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23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선교 · 김상훈 · 김위상  
김성원 · 최보윤 · 정동만  
김은혜 · 구자근 · 최수진  
윤상현 · 서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협동기관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좌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

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2호, 제95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

제9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2조(설립등기) ① (생 략)</p> <p>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1. (생 략)</p> <p>2. <u>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u></p> <p>3. · 4.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제95조(변경등기) ① (생 략)</p> <p>② <u>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③ 조합장은 <u>제1항과 제2항에</u>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p> <p>④ · ⑤ (생 략)</p>	<p>제92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출자 1계좌의 금액</u></p> <p>3.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95조(변경등기)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③ ----- <u>제1항</u>-----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